공직선거법위반

[서울남부지법 2008. 1. 22. 2008고합7]



【판시사항】

[1]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글의 내용 중에 '역겹다, 더럽고 치졸한 인간, 비열한 인간' 등의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양형참작 사유

【판결요지】

- [1]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특정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반대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글의 내용 중에 '역겹다, 더럽고 치졸한 인간, 비열한 인간' 등의 모욕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당선에 불리한 구체적인 사실이 모욕적인 표현과 함께 적시된 점, 게시 장소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블로그인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단순히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또는 의사표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글을 게시하는 행위'를 넘어 특정정당과 후보자의당선에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를 포함하는 행위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사례.
- [2]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 의하여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보장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민주주의의 작동을 담보하는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한 기초적인 제도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적인 의사표현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처벌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견표명과 여론형성과정에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저해하는 효과를 낳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광고물을 배부하거나 벽보를 붙이는 등의 행위와는 달리, 오늘날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점, 인터넷은 상대방이 정보의 수신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그 정보에 대해 반박하는 등 상호적·교섭적인 매체인 점 역시 양형에 있어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1]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 [2]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255조 제2항 제5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박승대

【변호인】 사법연수생 배지영

【주문】

]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이유】

]

[이유]

1

[이유]

]

[이유]

]

【이유】

]